

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[클린돌봄요양센터]

● 계약 기간

-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와 이용자(또는 보호자)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
-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(또는 보호자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(또는 보호자)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해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.
 1.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
 2. 감정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- ④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장이 이용자(또는 보호자)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● 계약 목적

-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,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(또는 보호자)와 센터 간의 권리·의무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‘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’(이하“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- ② 센터와 수급자 간의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다.

●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-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에 의한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.
- ② 이용자(또는 보호자)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(또는 보호자)가 부담한다.
- ③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한다.

〈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〉

(단위 : 원)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급
한도액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〈2026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〉

(단위 : 원)

방문당 시간	수가	방문당 시간	수가
30분	17,450	150분	50,640
60분	25,320	180분	57,020
90분	34,120	210분	63,530
120분	43,430	240분	70,080

〈2026년 방문목욕 급여비용〉

(단위 : 원)

구분	수가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차량 내 목욕)	88,99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	80,23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50,100

● 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권리

-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
-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

● 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의무

- ① 수급자 건강 및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②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
● 계약 해지

- ① 이용자(또는 보호자)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.
-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“급여외 행위” 요청이 있는 경우
 - 2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 - 3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
 - 4. 이용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
 - 5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